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55110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20565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551101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주식회사 B

3. C

변론 종결 2017. 8. 11.

판결 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9,541,831원 및 그 중 109,726,583원에 대하여는 2016. 8. 10.부터,

88,789,735원에 대하여는 2016. 7. 25.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88,789,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각 2016. 10. 2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89,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8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9. 6. 3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08,000,000원, 보증기간 2009. 6. 30.부터 2010. 6. 29.까지(그 후 2016. 6. 24.까지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A은 2009. 7. 1. 이 사건 제1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1.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88,000,000원, 보증기간 2011. 10. 12.부터 2012. 10. 11.까지(그 후 2016. 10. 7.까지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B가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는 2011. 10. 14. 이 사건 제2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중소기업은행은 2016. 7. 4. 원고에게 피고 B가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하여 2016. 6.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6. 7. 6. 원고에게 피고 A이 대출금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2016. 6.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④ 위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에 관한 주채무의 기한이익이 각 상실됨에 따라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중 109,726,583원(=원금 108,000,000원+이자 1,726,583원)을 대위변제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위변제'라 한다), 2016. 7. 25.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중 88,789,735원(=원금 88,000,000원+이자 789,735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제2대위변제'라 한다)한 사실, ⑤ 이 사건 제1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작성한 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위약금1)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대위변제에 의하여 발생한 위 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위약금은 244,990원인 사실, ⑥ 이 사건 제1보증약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보전을 위하여 780,523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⑦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및 제2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각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대위변제일인 2016. 7. 25.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 비율은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109,726,583원, 위약금 244,990원, 채권보전비용 780,523원,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연대보증금 88,789,735원의 합계 199,541,831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109,726,58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제1대위변제일인 2016. 8. 10.부터,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연대보증금 88,789,73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제2대위변제일인

2016. 7. 25.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 중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88,789,7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대위변제일인 2016. 7.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 A은 2016. 4. 10.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6. 4. 2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 A은 2011. 10. 13. 자신의 면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면천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6. 5.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4. 채권최고액 121,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3) 피고 A이 2016. 4. 10.경 보유한 소극재산은 아래 표 '채무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5,716,318원에 이른다.

1	2016. 4. 7.자 면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20,000,000
2	2013. 12. 17.자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7,853,000
3	2016. 3. 31.자 KB국민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채무	3,206,000
4	2016. 3. 15.자 하나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채무	8,600,000
5	2016. 4. 5.자 신한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채무	2,200,000
6	2011. 10. 15.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51,996,000

1	2016. 4. 7.자 면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20,000,000
7	2004. 1. 15.자 농협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000
8	2015. 10. 5.자 비엔케이캐피탈에 대한 보증채무	43,344,000
9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	109,726,583
10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한 구상보증채무	88,789,735
11	면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100,000,000
합계	435,716,318	

4)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가까운 2016. 4.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8,4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 시점인 2017. 1. 1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9,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 면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구상보증채권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및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6. 3. 25. 피고 A이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당시 피고 A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무렵 피고 A 및 피고 A이 운영하는 피고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앞서 본 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6. 25.,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6. 8.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및 제2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채권이 각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위변제 및 제2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도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188,4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소극재산이 원고의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및 제2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을 포함하여 435,716,318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A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479,656,000원의 가치를 갖는 피고 B 발행 주식 100%인 10,000주를 직접(55%) 또는 H, I, J의 명의(45%)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피고 B 발행 주식의 55%인 5,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H, I, J 명의의 피고 B 발행 주식 45%가 피고

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B 발행 주식 45%도 피고 A의 보유재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피고 B 발행 주식 45%가 피고 A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A의 보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의 총자산 683,213,464원 중 그 대부분은 유동자산 648,998,464원인데, 그 중 610,910,000원의 매출(미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갑 제3호증, 을 제2, 3, 8, 10호증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6. 4. 15.부터 신용카드채무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22면 이하 참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6. 6. 8.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140,000,000원에 대한 상환기한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6. 1. 5,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2016. 7. 18.부터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2016. 4. 10. 기준 재무상태표(을 제7호증) 부채 계정에 미지급세금 1,554,040원이 계상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소액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의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미수금으로 보이는 610,910,000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거나 대손상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B가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도 없어 위 매출채권 전부를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발행주식 10,000주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적극재산의 존재에 관한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의 선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C은, 피고 C이 피고 A보다 신용등급이 높아 보다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 A의 면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피고 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C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대로 피고 A, C이 부자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C은 악의의 수익자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전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면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6. 5. 4.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면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0,000,000원인 사실, 2017. 1. 1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9,1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9,1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89,100,000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면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을 공제한 89,100,000원(=189,100,000원-100,000,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8,516,318원(=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채권 109,726,583원+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구상보증채권 88,789,735원) 가운데 작은 금액인 89,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8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광우

판사주은아

판사이은상

별지

1) 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 제12조(보증료 등) ①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및 손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3. 위약금: 기업이 기한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제1호의 보증료율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요율을 더한 율을 곱하여 산출. 이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요율은 연율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